

I

라벨링(Labelling) 제도

1. GMO 라벨링(Labelling)

○ 정의

- 2018년 12월 20일 미국 농무부(USDA)는 GMO(Genetically Modified Organism) 라벨링 표기 기준을 발표함
- GMO란 실험기술을 통해 유전자가 변형된 농산물을 말함

○ 표기 시행일

구분	시행일
자발적 표기 시행일	2020년 1월 1일
필수 표기 시행일	2022년 1월 1일

○ 라벨링 표시

GMO 라벨링	
	
GMO 농산물이 포함된 식품일 경우	GMO 농산물이 포함되었으나 GMO 성분이 검출 되지 않는 식품일 경우 (자발적인 공개 권고)

○ 표기방법

- GMO 농산물 라벨링은 Bioengineered Foods(생명공학식품) 또는 BE Foods

로 표기하여야 함

- 생물공학식품 목록에는 사과, 카놀라, 옥수수, 목화, 가지, 파파야, 파인애플, 감자, 연어, 콩, 호박, 사탕무 등이 있음
- *향후 매년 품목 재검토를 통해 목록 변화가 있을 수 있음
- 식품제조·수입업자 및 소매상들은 문구, 기호, 전자 또는 디지털 링크(QR 코드)로 표기법을 선택할 수 있음
- 소규모 식품제조업체 또는 소형패키지(small and very small packages)의 경우 전화번호 또는 웹 주소만 표기하여도 됨

○ 특이사항

구분	특이사항
라벨 표기 제외 대상	- 유전자 변형 사료를 섭취한 가축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(달걀, 우유)일 경우
	- 재배·수확, 유통과정 중 GMO가 포함되더라도 5% 이하로 발견될 경우
	- GMO 작물을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최종 단계에서 유전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

2. 시사점

- GMO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으로 Bioengineered Foods 또는 BE Foods로 표기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문구 및 디지털링크(QR코드) 등으로 표기 시 GMO 식품임을 소비자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 혼돈을 줌. 또한, 식물성기름제조에 GMO 농산물을 사용했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GMO 유전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라벨링 표기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음. 이에 따라 GMO 농산물을 활용한 한국 농식품 수출시 GMO 라벨링 표기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숙지를 통해 향후 통관문제 발생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3. 관련 웹사이트

<https://www.ams.usda.gov/rules-regulations/be>

<https://www.ams.usda.gov/rules-regulations/be/bioengineered-foods-list>

<https://www.federalregister.gov/documents/2018/12/21/2018-27283/national-bioengineered-food-disclosure-standard>